

「2024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교재 정오표

(생명보험협회)

※ 페이지는 개정된 교재를 기준으로 함

구분	페이지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제1장	49	<p>한편 증권거래세는 ~ 비과세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되는 주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비상장주식 매매의 경우에는 0.43%,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코스피)에 대해서는 매도금액의 0.2%(증권거래세 0.05%,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매도금액의 0.2%,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매도금액의 0.1%를 원천징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25.1.1.)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p> <p>[참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22년</th> <th>’23년</th> <th>’24년</th> <th>’25년~</th> </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 <td>0.23%</td> <td>0.20%</td> <td>0.18%</td> <td>0.15%</td> </tr> <tr> <td>코스닥</td> <td>0.23%</td> <td>0.20%</td> <td>0.18%</td> <td>0.15%</td> </tr> </tbody> </table> <p><small>* 코스피분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small></p> <p>선진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참여비율과 이들의 매매회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수수료 및 증권거래세가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p>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23%	0.20%	0.18%	0.15%	코스닥	0.23%	0.20%	0.18%	0.15%	<p>한편 증권거래세는 ~ 비과세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되는 주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며,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25.1.1.)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p> <p>[참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22년</th> <th>’23년</th> <th>’24년</th> <th>’25년~</th> </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 <td>0.23%</td> <td>0.20%</td> <td>0.18%</td> <td>0.15%</td> </tr> <tr> <td>코스닥</td> <td>0.23%</td> <td>0.20%</td> <td>0.18%</td> <td>0.15%</td> </tr> </tbody> </table> <p><small>* 코스피분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small></p> <p>선진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참여비율과 이들의 매매회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수수료 및 증권거래세가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p>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23%	0.20%	0.18%	0.15%	코스닥	0.23%	0.20%	0.18%	0.15%	개정 반영 / 내용 간명화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23%	0.20%	0.18%	0.15%																														
코스닥	0.23%	0.20%	0.18%	0.15%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23%	0.20%	0.18%	0.15%																														
코스닥	0.23%	0.20%	0.18%	0.15%																														
제2장	131	<p>(3)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소득세법」 제14조, 제64조의4, 제129조) 연금소득은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 선택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p> <p>-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인 경우 :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p> </div> <p>(가)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3)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소득세법」 제14조, 제64조의4, 제129조) 연금소득은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 선택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p> <p>-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p> </div> <p>(가)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개정 사항 반영																														

제2장	133	<p>(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인 경우</p> <p>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사적연금소득합계액 연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3.1.1.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p> <p>사적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과세방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개정 전</th> <th>개정 후</th> </tr> </thead> <tbody> <tr> <td>종합과세</td> <td>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가능</td> </tr> </tbody> </table>	개정 전	개정 후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가능	<p>(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초과인 경우</p> <p>사적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2년 세법 개정시(최초 도입시)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1,200만원이었으나, '23년 세법 개정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p> <p>사적연금소득 과세방법/분리과세기준/적용시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정 전</th> <th>'22년 개정</th> <th>'23년 개정</th> </tr> </thead> <tbody> <tr> <td>과세 방법</td> <td>종합과세</td> <td>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가능</td> <td>-</td> </tr> <tr> <td>분리과세 기준</td> <td>-</td> <td>연 1,200만원 이하</td> <td>연 1,500만원 이하</td> </tr> <tr> <td>적용 시기</td> <td>-</td> <td>'23.1.10후 연금수령분부터</td> <td>'24.1.10후 연금수령분부터</td> </tr> </tbody> </table>	구분	개정 전	'22년 개정	'23년 개정	과세 방법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가능	-	분리과세 기준	-	연 1,200만원 이하	연 1,500만원 이하	적용 시기	-	'23.1.10후 연금수령분부터	'24.1.10후 연금수령분부터	개정 사항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가능																																							
구분	개정 전	'22년 개정	'23년 개정																																					
과세 방법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가능	-																																					
분리과세 기준	-	연 1,200만원 이하	연 1,500만원 이하																																					
적용 시기	-	'23.1.10후 연금수령분부터	'24.1.10후 연금수령분부터																																					
제2장	135 ~136	<p>그러나 연금저축은 ~ 분류된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연 1,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p> <p>이와 같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는 ~ 분명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p> <p>(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비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변액)연금보험</th> <th>연금저축</th> </tr> </thead> <tbody> <tr> <td>취급기관</td> <td>생명보험회사</td> <td>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td> </tr> <tr> <td>세제혜택 적용요건</td> <td>일시납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계약 중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td> <td>보험료 납입 및 인출요건의 충족</td> </tr> <tr> <td>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td> <td>없음</td> <td>연금계좌 세액공제</td> </tr> <tr> <td>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td> <td>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td> <td>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200만원 이하시 : 3~5%의 세율 적용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200만원 초과시 : 15% 세율 적용</td> </tr> <tr> <td>소득구분</td> <td>이자소득</td> <td>연금소득</td> </tr> </tbody> </table> <p>*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사, 공제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에서 취급 가능</p>	구분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세제혜택 적용요건	일시납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계약 중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	보험료 납입 및 인출요건의 충족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없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200만원 이하시 : 3~5%의 세율 적용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200만원 초과시 : 15% 세율 적용	소득구분	이자소득	연금소득	<p>그러나 연금저축은 ~ 분류된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저율 분리과세를,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p> <p>이와 같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는 ~ 분명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p> <p>(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비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변액)연금보험</th> <th>연금저축</th> </tr> </thead> <tbody> <tr> <td>취급기관</td> <td>생명보험회사</td> <td>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td> </tr> <tr> <td>세제혜택 적용요건</td> <td>일시납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계약 중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td> <td>보험료 납입 및 인출요건의 충족</td> </tr> <tr> <td>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td> <td>없음</td> <td>연금계좌 세액공제</td> </tr> <tr> <td>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td> <td>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td> <td>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500만원 이하시 : 3~5%의 세율 적용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500만원 초과시 : 15% 세율 적용</td> </tr> <tr> <td>소득구분</td> <td>이자소득</td> <td>연금소득</td> </tr> </tbody> </table> <p>*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사, 공제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에서 취급 가능</p>	구분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세제혜택 적용요건	일시납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계약 중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	보험료 납입 및 인출요건의 충족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없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500만원 이하시 : 3~5%의 세율 적용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500만원 초과시 : 15% 세율 적용	소득구분	이자소득	연금소득	개정 사항 반영
구분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세제혜택 적용요건	일시납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계약 중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	보험료 납입 및 인출요건의 충족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없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200만원 이하시 : 3~5%의 세율 적용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200만원 초과시 : 15% 세율 적용																																						
소득구분	이자소득	연금소득																																						
구분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세제혜택 적용요건	일시납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계약 중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	보험료 납입 및 인출요건의 충족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없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500만원 이하시 : 3~5%의 세율 적용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500만원 초과시 : 15% 세율 적용																																						
소득구분	이자소득	연금소득																																						